

## 합동 및 협동강의 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합동 및 협동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정의)**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“합동강의”라 함은 한 과목을 2인 이상이 주별로 단원 또는 주제를 나누어 담당하는 강의를 말한다.

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“협동강의”라 함은 단기간에 효과적인 교육과 교과목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하기 위하여 명망 있는 외부전문가를 초빙하거나 또는 본교의 전임교수와 함께 주강사 참여하에 진행되는 강의를 말한다.

**제3조 (합동강의)** ① 합동강의는 전임교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, 과목 수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는다.

② 합동강의를 하고자 하는 전임교수는 수업계획서에 그 사실과 초빙강사명, 합동강의일자 등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삭제 (2016.08.01.)

④ 매학기 합동강의신청은 개강 전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, 합동강의를 시행한다.

**제4조 (협동강의)** ① 협동강의는 전임교원이 신청할 수 있다.

② 협동강의를 하고자하는 전임교수(주강사)는 수업계획서에 그 사실과 초빙강사명, 협동강의일자 등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출강표에는 반드시 주강사와 초빙강사가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.

④ 집중강의는 협동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⑤ 삭제 (2016.08.01.)

⑥ 매학기 협동강의신청은 개강 전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, 협동강의를 시행한다.

**제5조 (초빙강사의 자격)** 강사임용 기준에 준하는 자로서 이력서 및 관련분야 경력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6조 (강사료지급)** ① 협동강의시 별도의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는다. 다만 필요한 경우 총장의 재가를 득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합동강의 강사료는 2인 이상이 담당할 경우 실제 강의한 주차수에 따라 지급한다.

**제7조 (기타사항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합동 및 협동강의 규정(6-31-1)

---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6조)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3조, 제4조)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